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5. 16 선고 2022가단163617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4. 18.

판 결 선 고 2023. 5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. 3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장민경

청 구 원 인

1.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50,000,000원 대여, 피고의 연대보증

가. 원고는 2012. 08. 06.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주식회사 C에 "대여금 50,000,000원, 변제기한과 방법 2012. 11. 05.까지 전액 변제"로 정하여 대여(갑 제1호증 :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, 제2조)하였고,

나.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(갑 제1호증 관계자의 표시 란)을 하였습니다.

2. 연대보증채무 청구의 소 제기

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원고는 공정증서 상의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고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

